

부산광역시 사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번 호	212
-------------	-----

제출년월일 : 2006. 4. 20

제출자 : 최광렬의원외 6인

1. 제안이유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기간 동안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던 실비변상 금액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탄력적으로 지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결산검사위원의 실비변상 지급 기준 개정(안 제8조 제1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던 실비변상 금액을 회기수당 일비 상당액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되, 의원인 위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3. 참고사항

가.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2조

나. 행정자치부 질의 · 회신 공문

부산광역시 사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검사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실비변상)</p> <p>① 검사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 (이하“의원”이라 한다) 회기수당 일비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은 의회의 회기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② ~ ④ (생 략)</p>	<p>제8조(실비변상)</p> <p>① 검사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은 수당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